

2025년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

『2025년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

<사업 일정>

신청 · 접수기간	선정평가	협약
'24년 10월 7일 ~ '25년 1월 6일	'25년 1~3월	'25년 4~5월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변경 사항> (□는 생략 가능)

구 분	사업공고 주요변경 사항																								
	2024년도	2025년도																							
접수시기	• '24년 2~3월(1개월 내외)	• '24년 9월~ '25년 1월(약 3개월)																							
사업비구성	• 사업비 편성시 현금만 가능	• 사업비 편성시 현물도 가능 (민간부담금 중 20%)																							
	<table border="1"> <tr> <th>정부 지원금</th> <th colspan="2">민간부담금</th> <th>합계</th> </tr> <tr> <td>200</td> <td>현금</td> <td>현물</td> <td>400</td> </tr> <tr> <td>(50%)</td> <td>(50%)</td> <td>(-)</td> <td>(100%)</td> </tr> </table>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200	현금	현물	400	(50%)	(50%)	(-)	(100%)	<table border="1"> <tr> <th>정부 지원금</th> <th colspan="2">민간부담금</th> <th>합계</th> </tr> <tr> <td>200</td> <td>현금</td> <td>현물</td> <td>400</td> </tr> <tr> <td>(50%)</td> <td>(40%)</td> <td>(10%)</td> <td>(100%)</td> </tr> </table>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200	현금	현물	400	(50%)	(40%)	(10%)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200	현금	현물	400																						
(50%)	(50%)	(-)	(100%)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200	현금	현물	400																						
(50%)	(40%)	(10%)	(100%)																						
사업관리 변경사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중간 점검 구축 진행 최종 감리 완료 점검 집중 A/S 최종 평가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중간 점검 구축 진행 최종 감리 완료 점검 집중 A/S 최종 평가 </div>																							
중간점검	•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	•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협약후 3개월 내)																							
최종점검	• 최종감리 후 완료점검 진행	• 최종점검으로 통합																							
집중A/S	• 집중 A/S기간 6개월 필수 수행	• 최종평가결과 "보완" 시 집중A/S 수행 및 최종재평가 진행																							

<사업계획서 "2.6 표준 연계" 필수 작성>

· 스마트 제조 표준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24년) 스마트공장 표준적용 시 가점 부여 → ('25년) 스마트공장 표준 적용 필수

-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1.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기획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내용)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 조건)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총 사업비 50% 이내)

구 분	지원 한도	지원 기간	지원비율
개별 스마트공장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고도화(동일수준)	0.5억 원	최대 12개월 50% 이내
	고도화	2억 원	

* 개별 스마트공장의 지원 조건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4. 10. 7.(월) ~ '25. 1. 6.(월)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디지털협업공장" → 과제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공동, 개별, 기획기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동의서 - (참여기업)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참여기업) 참여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대표기업이 가점 신청시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공통 사항) 컨소시엄 내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상호협력 계약체결 및 공증 필수
 - * 공증 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하며, 상세내용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도입기업 컨소시엄)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최소 5개)

※ 최종 선정·협약 이후에도 컨소시엄 최소 구성요건(5개 이상) 유지 필수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컨소시엄)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으로 구성

※ '사업관리시스템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 참고

- (기획기관) 디지털협업공장 확산방안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 연구소, 협·단체, 지역TP, 공공기관 등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지원 절차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붙임1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협업공장 연결효과,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등을 평가
 - ※ 서면평가 접수 결과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디지털협업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컨소시엄의 역량 등을 대면(발표)으로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가점 등 확인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등 진행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원과제 확정

□ 추진 절차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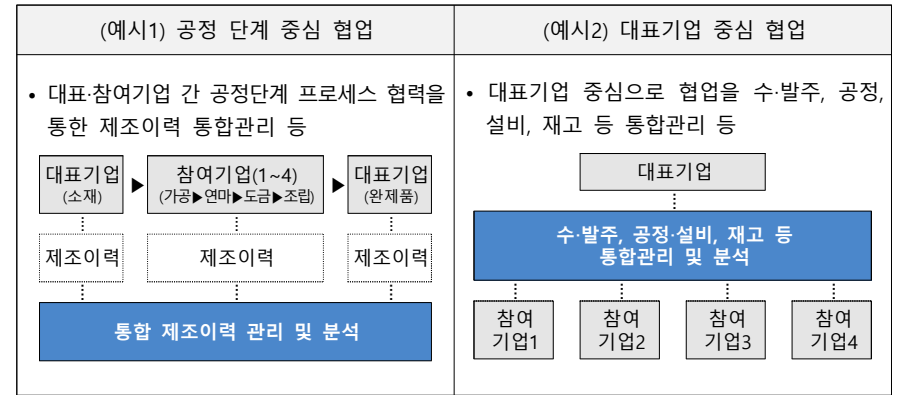
4. 유의사항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사업계획작성) 도입·공급기업, 기획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기획기관 운영계획) 기관의 운영역량 및 컨소시엄의 관리·역량 강화 방안,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의 확산 전략 등을 작성
 - (공동·활용 구축 계획)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범위(목표) 및 활성화 계획, 제조데이터 공유·활용에 대한 계획 등 작성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 참여기업의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계획·목표 등 작성

< 디지털협업공장 예시 >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동일수준' 예외 사항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
 - * (예시, 초과달성) ①'기초'목표로 수행후 '중간1' 달성, ②'중간1'목표로 수행 후 '중간2' 달성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제조 데이터 표준 적용

- (양식) 사업계획서의 **"2.6. 표준 연계"** 필수 작성
 - 구성도, IEC 62541(OPC 통합아키텍처) 및 IEC 63278(AAS,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의 표준 적용 범위 등 작성

< 제조데이터 대상 표준 >

①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설비(하드웨어)-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
- * 인터페이스(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신, 플랫폼-솔루션의 소프트웨어 통신)

②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재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
- * AAS 캡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 또는 솔루션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양식의 공유를 통해 데이터 식별

- 필요시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적용과 관련한 통신장비(DAQ 등) 및 센서 추가 등 구축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 가능

□ 사업비 편성 관련

- (사업비 구성) 컨소시엄 사업비 구성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세부내역을 구별하여 사업비 구성

※ (예시) 사업비 구성 : (공동·협업) 6억원(1.2억원x5개) + (개별 구축) 14억원(2.8억원x5개)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비 구성			
	직접사업비 (50%)	민간부담금 (50%)	합계 (100%)	공동·협업 (30%)	개별구축 (70%)	합계	
A 컨소시엄	합계	1,000	1,000	2,000	600	1,400	2,000
	대표기업	200	200	400	120	280	400
	참여기업1	200	200	400	120	280	400
	참여기업2	200	200	400	120	280	400
	참여기업3	200	200	400	120	280	400
참여기업4	200	200	400	120	280	400	

- (기획기관 운영비) 정부지원금의 5% 이내로 위탁운영비 별도 편성
 - * 향후 최종선정 및 원가계산이 완료된 컨소시엄의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조정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각 참여기업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의 기타비용에 필수 포함
 - ① 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부가세 제외
200백만원 이하	637	
400백만원 이하	910	
400백만원 초과	1,182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② 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 (1백만원) 필수 편성
- ③ 기술임치비 :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 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 4천만원 이내에서 편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 확인
-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해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 사업관리교육 및 ②기술교육을 수료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점검 시 수료증 필수 제출
- (교육기관) 별도 안내

구분	세부 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기획기관, 공급기업(총괄책임자 및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 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③제조데이터 표준모델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기획기관, 공급기업(총괄책임자 및 실무자) - 내용 :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및 가이드스 활용, AAS 기반 제조데이터 수집·저장체계 등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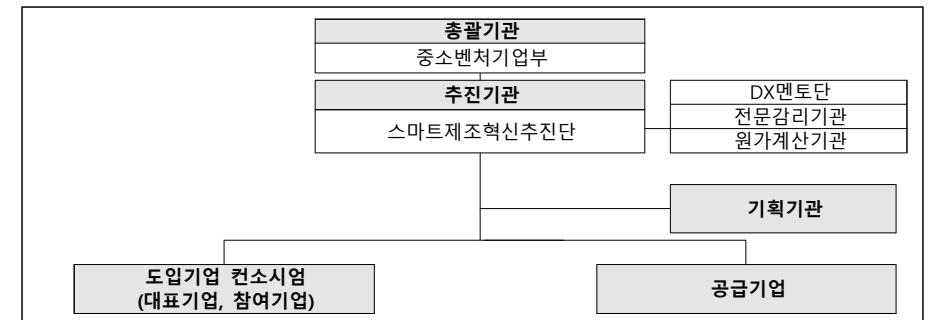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세부관리기준 제개정 - 기획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기획기관	지역TP 및 공공기관, 협단체 등	- 디지털협업공장 컨소시엄 구성 및 관리 - 구축현황 점검(중간, 완료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 협약변경 등 - 문제과제 특별점검 등
도입기업	대표기업	- 공동협업 플랫폼 구축 및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총괄관리 등
	참여기업	- 개별 스마트공장 추진 및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협력 등
공급기업	공급기업 컨소시엄	- 공동협업 플랫폼 구축 및 개별 도입기업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총괄 진행, 참여 공급기업 관리 등

6. 문의기관

□ 담당기관 연락처

담당 기관		문의 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	044-204-7253, 7262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1~3, 0957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평가 지표

□ 서면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공급망 연결효과 (30점)	• 디지털협업공장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5
	• 대표참여기업간 협업 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	15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20점)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10
	•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10
지원 적정성 (30점)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10
도입기업 역량 (20점)	• 사업목표의 적절성	5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극성 및 구체성	5
	• 핵심지표(KPI)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5
	• 고용창출, 시장확대 등에 대한 의지 및 효과	5
총 점		100

□ 기술성 평가지표

○ 기획기관 역량평가

평가항목		배점
보유역량 (50점)	• 신청기관의 보유한 전문성	10
	• 추진실적 및 디지털협업공장과의 연계성	10
	• 기관 조직의 구성현황 및 관리능력의 우수성	10
	• 컨소시엄 연계지원 및 연계프로그램 보유 여부	10
	• 디지털협업공장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의 추가 활용기업 Pool 보유 여부	10
사업수행 내용 (50점)	• 디지털협업공장 및 도입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이해도	10
	• 디지털협업공장 지원체계의 적정성	10
	• 디지털협업공장 지원 방안 및 과정의 구체성	10
	• 전략수립 지원에 대한 추진 방안 및 일정의 적절성	10
	• 전담 PM 등 참여인력 및 사업비 구성·배분의 적절성	10
합계		100

○ 도입기업 컨소시엄 평가

평가 항목		배점
도입기업 역량 (30점)	• 디지털협업을 추진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현황이 양호하여 지속 가능한가?	5
	• 컨소시엄 참여기업 외 추가 활용기업이 확보되어 있는가?	5
	•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30점)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준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4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가점(5점)	-	(5)
합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가점제외한 도입기업 컨소시엄 점수가 높은 기업, ②도입기업 컨소시엄 평가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2개)

구분	항목	세부내용	제출서류
1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내)
2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 대표기업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 현장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 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붙임 2

동시수행 제한사업 목록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

사업명(지원유형)	2021	2022	2023	2024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고도화1, 고도화2)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				
-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일반형)				
-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 디지털협업공장				
-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자율형공장				
-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단, 집중A/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

동시 선정·신청 제한사업 목록('25년 신규 신청인 경우)

사업명	내용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지역특화 프로젝트 포함)	①~⑥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② 자율형공장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⑤ 디지털 협업공장	
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⑦ 스마트공장 AS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완료 후 신청 (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⑧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①~⑤ 사업 중 하나와 ⑧,⑨ 사업 동시수행가능 ※ ①~⑤사업에서 FEMS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만 ⑧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동시수행가능
⑨ 제조혁신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참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